

위험물 포장·용기 검사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대표자	생년월일	
	소재지 (전화번호:)		
위험물용기	종 류		
	재 질		
	제 조번호	수 량	
검사종류	초기검사[] 정기검사[] 수시검사[]		
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			
기타	직전 정기검사 합격일	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의 주행거리 정기검사 신청일의 누적 주행거리	

「철도안전법」 제44조의2제1항 및 「위험물철도운송규칙」 제22조제2항·제3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·용기 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위험물 포장·용기검사기관장 귀하

첨부서류	1. 위험물용기등의 제작사양에 관한 자료(초기검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철도준사고 내역(수시검사의 경우로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등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된 위험물용기등의 부품 교체 내역(부품을 교체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	수수료 「철도안전법」 제74조에 따라 위험물 포장·용기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
기타란 작성 시 유의사항	1. '기타' 란은 정기검사의 경우만 적습니다. 2. '기타' 란의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의 경우 수시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수시검사 합격일을 적습니다. 3. '기타' 란의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의 주행거리 및 정기검사 신청일의 누적 주행거리는 유류·황산 운송용 고정용기의 경우만 적습니다.	

처리절차

